

제220차 임시이사회 안건집

제안자	(사)한국음반산업협회장
제안일	2025. 10. 31.(금)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순서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의장인사

4. 전차 이사회 의결사항

5. 주요 업무보고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공모의 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개선명령 이행 현황 보고

6. 부의 안건

의안 제01호 사무처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개정의 건

(조직개편 검토의 건)

의안 제02호 전무이사 결원에 따른 후속조치 건

의안 제03호 임직원에게 대한 법률분쟁 비용지급 및 보전의 건

7. 기타사항

8. 진행 및 예정사항

전차 이사회(제219차) 의결사항

1. 개요

가. 일 시 : 2025. 09. 30.(화) 14:00

나. 재적이사 : 10인

다. 출석이사 : 9인

- 이사(9인) : 최경식(의장), 김광, 김성일(박영석 대리), 시성웅, 김희성, 서판석, 이영웅, 임두빈, 전상욱(이광용 대리)

2. 주요 업무보고

가. 2025년 상반기 결산 보고

나. 케이팝싱크 신탁음원 사용료 MG 연체 관련 소송 결과 보고

다. 협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완료

라.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업무협약 보고

마.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업무협약 보고

바. 2025년 추석 원로회원 복지금 지급 보고

3. 의안심의

의안 제01호 업무추진비 지급 규정 개정 및 세척 신설의 건

업무추진비 지급 규정 내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세척을 신설, 운영하는 원안에 대하여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됨

의안 제02호 투명성위원회 구성의 건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투명성위원회'는 '위원회' 명칭 사용 시 협회 위원회 규정의 일부 조항(제3조 제1항)을 위배할 소지가 있으므로, 명칭을 '자문위원단'으로 변경한 수정안으로 가결됨

의안 제03호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준비를 위한 용역사업 추진의 건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준비 관련 전문가 선정 및 용역비 지급에 대한 원안이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됨

주요 업무보고

1.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공모의 건

가. 개요

- 2025. 10. 20.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공모에 대한 공고가 게시된 바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함

나. 주요내용

(1)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신청자격

(가)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단체

-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 권리자의 권익 증진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최초 지정신청단체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회원 확보 내역을 제출할 것(회원 서명 요)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나) 구성원의 의결권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

(다) 임기 2년(최대 4년)의 전문경영인제를 도입·운영 중인 단체

*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한 단체의 현직 전문경영인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 단체 소개서(임원 약력 및 직원 현황 등 작성 필요)

- 보상금 업무 사업계획서(저작권법 시행령 제4조 보상관계 업무규정(안) 포함)

- 정관 또는 제 규정집, 법인등기부등본 및 고유번호증

-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동의 권리자 및 권리자 단체 명부

-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원 보수 현황 및 '26년 책정 계획서(보상금 업무 관련 임원에 한함)

- 회원명부

(3) 제출 기간 : 2025. 10. 20.(월)부터 2025. 11. 30.(일) 18:00까지

(4) 보상권리자 의견수렴 : 접수 마감 후 전체 응모단체 대상 보상권리자 의견수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지 참조

[별지 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319호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2.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개선명령 이행 현황 보고

[별지 2 - 2024년 협회 업무점검 결과 및 개선명령]

가. 협회 부회장의 해외출장비 지급 처리 부적정

(1) 현황 및 문제점(요약)

- 출장기안서(5.20~24), 결과기안서(4.15~19)의 출장 일시가 다름
- 출장결과보고서에 출장자 사진이 없고, 협회와 무관한 업무협약식 사진, 현지 출장 여부가 결과보고서의 내용으로 증명되지 않음
- 출장자 여비 정산이 규정과 달리 귀국일로부터 2개월 지난 시점에 1차로 이루어지고, 항공료 실비 정산은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짐

(2) 개선사항

- 부당 집행한 해외출장비 2,987,070원을 문○○으로부터 환수할 것 (시정사항)
- 감사는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사회 및 문체부에 보고할 것 (시정사항)

(3) 이행현황

- 2025. 06. 12.(목) : 사무처가 문○○ 앞으로 해외출장비에 대해 지적을 받아 업무개선명령의 이행을 위해 환수가 필요함을 설명함
- 2025. 06. 13.(금) : 문○○ 협회 방문, 당시 사무처 업무처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의뢰서를 제출함(수신 : 한용진 감사)
- 2025. 09. 01.(월) : 유사 사례 조사를 위한 감사 요청자료 제출(수신 : 한용진 감사)

(4) 참고사항

- 위 개선사항 두 건(해외출장비 환수, 유사 사례 조사) 모두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감사 조사 과정으로 해외출장비 환수에 대해 관련자 면담 등이 진행됨

(5) 예정사항

- 감사 요청에 따라 문○○ 해외출장비 관련 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 의뢰 예정
- 향후 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업무개선명령 이행 추진 예정

나. 중요사항을 서면결의로 처리 등 이사회 운영 부적정

- ※ 제220차 이사회 안건 심의 사항

다. 서류·면접위원 동일, 채용 시 증빙서류 검토 부실 등 채용절차 개선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요약)

- 경력직 등 채용 과정에서 채용서류(경력사항 등)를 검증한 사례가 없음
-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음(동일한 평가위원 구성)

(2) 개선사항

-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등 채용 전반을 검토한 후, 협회 채용 절차 및 규정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할 것 (시정사항)

(3) 이행현황

- 2025. 06. 12. : 전문가(서울노무사사무소) 의뢰, 관련 자료 전달
- 2025. 07. 06. : 전문가 의견서 초안 수신, 검토
- 2025. 07. 07. : 전문가 의견서에 대한 추가 요청(면접관 안내문, 평가표 제공 등)
- 2025. 07. 13. : 전문가 의견서 및 추가 요청 자료 수신
- 2025. 09. 12. : 채용 절차 개선(안) 작성

※ 개선사항 : 응시자 경력사항 검증 절차 보완, 서류 및 면접 전형의 독립성 확보, 면접평가표 활용, 면접위원 교육(안내문), 블라인드 채용(차별 금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삭제 등)

- 2025. 10. 23. : 2025년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절차 개선(안)' 보고

[별지 3 - 2025년 채용 절차 개선(안)]

라. 사용료 회계 관리체계 강화 | 해외 징수 및 분배액 현황 공시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요약)

- 2024년 업무점검 사전 제출된 자료와 현장에서 제출한 자료의 수치가 상이함 → 전반적인 회계 관리 체계 강화 필요
- 협회 홈페이지에 해외 징수 및 분배 현황을 특별한 사유 없이 공시하지 않음

(2) 개선사항

- 사용료 징수·분배 관련 통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권고사항)
- 해외사용료 징수 및 분배 현황을 공시할 것 (시정사항)

(3) 이행현황

(가) 사용료 징수·분배 관련 통계 관리 강화 방안

- 해당 자료를 타부서와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형태로 전환 추진

- 홈페이지 개편 이후 DB 시스템 관리기능 개발 진행 중(11월 내 개발 완료)
- 최근 5년간 기간별, 지역별, 서비스별, 상세 징수금액 업데이트 예정(10~11월 내)

(나) 해외사용료 징수 및 분배 현황

- 홈페이지 상세내역 검색 기능 추가 개발 중(11월 중 완료 예정)

* 현행 : 징수, 분배 전체 금액만 공시

신탁사용료 징수현황		미분배금액 현황	
2025년	전체분기	검색	
2025년 1분기	징수업체: 17개	징수금액: 4,275,120,927원	분배금액: 4,753,436,254원

* 개편 후 : 상세 금액 공시 (현재 개편 진행 중)

시작	종료	항목	검색
2025년 1분기	2025년 4분기	전체/국내/해외복제/기타	검색
2025년 1분기	징수업체: 17개	징수금액 국내 전송서비스: 0,000,000,000 원 해외 전송서비스: 0,000,000,000 원 해외 실연권징수: 0,000,000,000 원 복제, 대리중개: 0,000,000,000 원 기타 서비스: 0,000,000,000 원	분배금액 국내 전송서비스: 0,000,000,000 원 해외 전송서비스: 0,000,000,000 원 복제, 대리중개: 0,000,000,000 원 기타 서비스: 0,000,000,000 원

마. 법인카드(업무추진비) 휴일 집행 제한 등 사용관리 개선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요약)

- 법인카드의 횡령 등 부정행위 방지, 사용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절차 마련 필요
- 제출된 집행서류 등으로는 사용 목적 및 집행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없음
- 23시 이후 심야시간 사용 내역도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절차 필요

(2) 개선사항

-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관리 및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등을 참고하여 법인카드 사용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문체부로 보고할 것 (시정사항)

(3) 이행현황

- 2025. 09. 30. : 제219차 이사회 '업무추진비 지급 규정 개정 및 세척 신설의 건' 안건 상정, 의결

바.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에 협회 사용료 계약서 업로드 철저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요약)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에 업로드된 협회 계약서에 과거 징수 규정으로 표기한 계약서가 있거나 낱짜, 서명·날인 누락 등의 사례가 있음

(2) 개선사항

- 잘못 업로드된 계약서를 수정하여 업로드, 향후 계약서 업로드 시 내역을 철저히 확인할 것 (시정사항)

(3) 이행현황

- 2025. 09. 03.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업무 절차 관련 회의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의 시스템에 대해 문의한 결과 과거 기간의 계약서 재업로드, 수정 등이 불가하여 개선사항에 따라 업무이행 불가함
- 업체별 발생원인 파악, 후속조치(재계약, 해지 확약서, 부속서 체결 등)를 수행한 후 별도 보고 예정

사. 협회 매출액 증가를 위한 신규 사업 개발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요약)

- 2011년 이전 발생한 차입금 상환 미비, 특히 2023년에는 전혀 상환하지 않음
- 차입금 상환을 위해 궁극적으로 매출 규모 확대가 필요함

(2) 개선사항

- 매출액 확대를 위해 신규 사업계획(차입금 상환계획 포함)이 포함된 협회 중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문체부로 보고할 것 (시정사항)

(3) 이행현황

- 2025. 06. 16. : AI를 활용한 사업계획(안) 수립 회의(대상 : 전직원)
- 2025. 06. 18. : 제217차 이사회 '신규신탁 확대를 위한 입회비 면제의 건'
- 2025. 06. 25. : AI를 활용한 사업계획(안) 취합
- 2025. 07. 15. : 차입금 상환을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서 취합(업데이트 지속)

[별지 4 - 차입금 상환을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서]

의 안 심 의

의안 제01호 사무처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개정의 건
(조직개편 검토의 건)

의안 제02호 전무이사 결원에 따른 후속조치 건

의안 제03호 임직원에게 대한 법률분쟁 비용지급 및 보전의 건

의안 제01호 사무처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개정의 건

1. 의결주문

사무처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개정(조직개편)의 건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주문함

2. 제안설명

지난 제211차 이사회(2024. 08. 09.)에서 경영혁신 및 협회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무처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을 개정하는 원안에 대하여 재적이사 10인 중 5인이 원안 찬성, 5인이 기권함에 따라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정관 제53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장이 원안 가결로 결정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점검 결과 중요사항을 긴급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결의한 것은 정관 제52조를 위반한 것으로, '조직 개편사항에 대해 이사회 재의결을 요구할 것'이라는 시정사항을 받았으며, 이후 제217차 이사회(2025. 06. 18.)에서 제211차 이사회 안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상정한 결과 '보류, 근거를 보완하여 차기 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결의한 바 인사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 반영한 의안을 이사회에 부의함

3. 주요 내용

가. 1안 (현재 적용된 조직개편(안) - 제211차 이사회 서면결의)

(1) 관련 규정 : 사무처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2) 주요 조직개편 사항

(가) 3국 1TF 7팀을 7팀으로 편제 조정

- 신속한 보고 및 의사결정

(나) 회원유치영업팀 신설

- 회원유치영업팀을 신설, 500억 달성을 위한 초석 마련

(다) 회장이 회원관리팀 직접 관리

- 회장이 민원 총괄책임자가 되어 모든 민원의 보고를 받고 처리방안 결정

- 회원 만족 강화를 위한 민원 기능 보강

- 회원 유치를 위한 브랜딩 및 마케팅 등 홍보 강화

(라) 징수와 분배업무를 라이선스&분배팀으로 통합

- 징수와 분배업무를 한팀에서 수행토록 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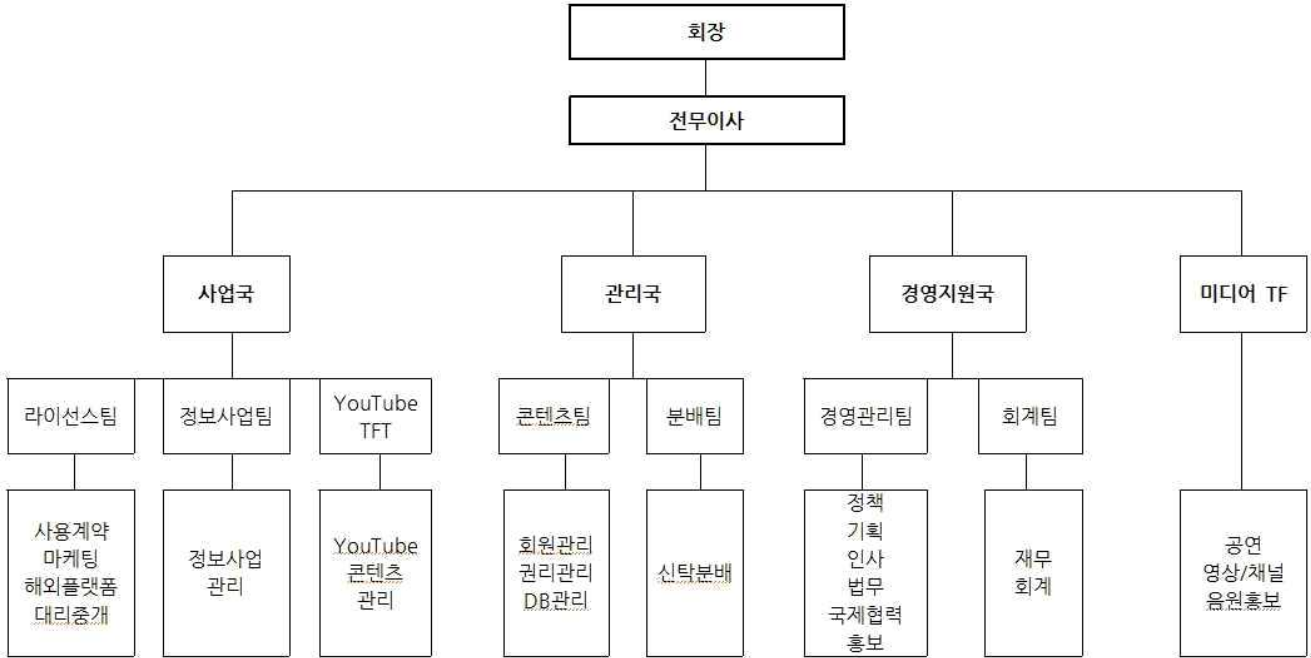
(마) 유튜브TFT를 미디어&유튜브팀으로 승격

- 유튜브 업무 집중 관리를 통한 회원서비스 강화, 매출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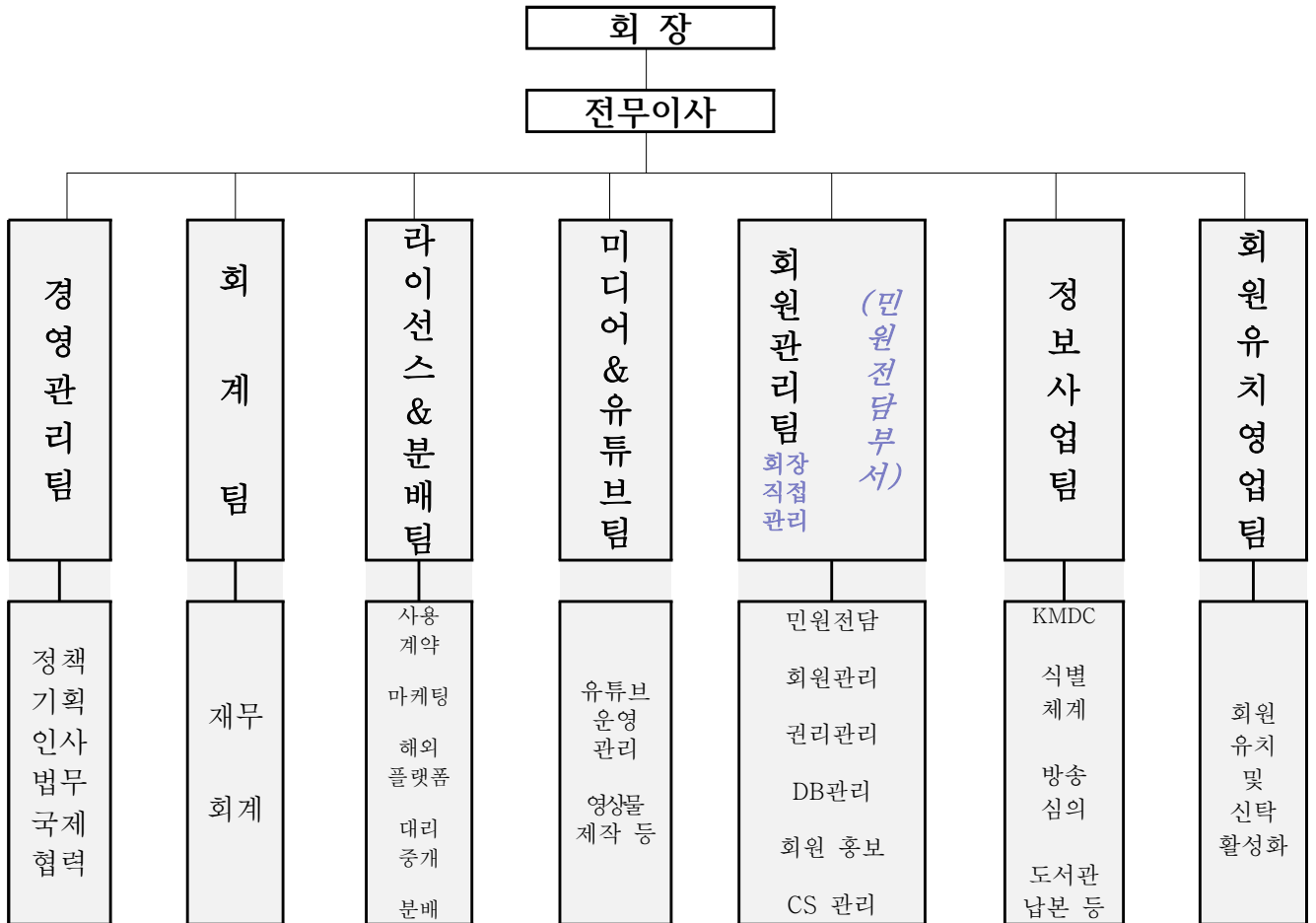
(3) 참고사항 : 현 사무처 조직은 제211차 이사회(2024. 08. 09.)에서 서면결의한 후 2024. 09. 01.자 인사명령으로 이행됨

(4) 사무처 조직도(조직개편 전/후 비교)

<조직개편 전 조직도 : 3국 1TF 7팀>



<조직개편 후 조직도 : 7팀>



(5) 사무처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사유
<p>제4조(기구 및 정원) ① 사무처의 조직은 (별지 1)과 같다.</p> <p>②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37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③ 직급별, 국·팀별 정원은 정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전무이사가 정한다.</p> <p>④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p>	<p>제4조(기구 및 정원) ① 사무처의 조직은 (별지 1)과 같다.</p> <p>②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37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③ 직급별, 팀별 정원은 정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전무이사가 정한다.</p> <p>④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p>	편제 조정
<p>제6조(보직) ① 전무이사는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② 국장은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③ 팀장은 <u>국장의 지시에 따라 소관업무를 처리한다.</u></p> <p>④ 직원은 <u>국장 및</u> 팀장의 지시에 따라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p> <p>⑤ 제8조에 의한 정원 외 근로자는 소속 부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p>	<p>제6조(보직) ① 전무이사는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② <삭제></p> <p>② 팀장은 <u>전무이사의 지시에 따라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u></p> <p>③ 직원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소관업무를 처리한다.</p> <p>④ (현행과 동일)</p>	신속한 보고 및 의사결정
<p>제7조(사무처직제 및 업무분장) ① 사무처 직제 및 업무분장은 전무이사가 정한 별도로 정한다.</p> <p>② 직제의 서열은 <u>사업국장, 관리국장, 경영지원국장</u> 순으로 한다.</p>	<p>제7조(사무처직제 및 업무분장) ① (현행과 동일)</p> <p>② 직제의 서열은 <u>선임 상위 직급</u> 순으로 한다.</p>	
<p>제9조(업무매뉴얼) ① 소속직원은 사무처직제 및 업무내역에 따라 해당 보직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업무매뉴얼은 소속 <u>국장</u>이 관리하며 1부는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한다.</p> <p>③ 인사담당자는 본 규정에 따른 직제 및 업무매뉴얼을 취합·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업무매뉴얼은 항상 최신의 업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를 한다.</p>	<p>제9조(업무매뉴얼) ① (현행과 동일)</p> <p>② 업무매뉴얼은 소속 <u>팀장</u>이 관리하며 1부는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한다.</p> <p>③ (현행과 동일)</p> <p>④ (현행과 동일)</p>	편제 조정

[별지 5. 사무처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개정안 전문(1안)]

나. 2안 (2025년 제1차 인사위원회 조직개편(안))

(1) 관련 규정 : 사무처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2) 주요 조직개편 사항 (현재 적용된 조직개편(안)에서 변경된 사항을 표기)

(가) 3국 1TF 7팀을 2국 7팀으로 편제 조정

- 국 체계 유지로 안정성 도모

(3) 참고사항

- 협회가 화합하고 사무처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사무처 조직도

<조직개편 후 조직도 : 2국 7팀>



(5) 사무처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사유
<p>제7조(사무처직제 및 업무분장) ① 사무처 직제 및 업무분장은 전무이사가 정한 별도로 정한다.</p> <p>② 직제의 서열은 <u>사업국장, 관리국장, 경영지원국장</u> 순으로 한다.</p>	<p>제7조(사무처직제 및 업무분장) ① (현행과 동일)</p> <p>② 직제의 서열은 <u>선임 국장</u> 순으로 한다.</p>	

[별지 6. 사무처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개정안 전문(2안)]

다. 참고사항

- 본 조직개편 사항은 제211차 이사회(2024. 08. 09.)에서 서면결의한 후 2024. 09. 01.자 인사명령으로 이행, 현재까지 해당 조직체계로 운영 중에 있음

- 향후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심사 결과에 따라 전면 또는 부분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사무처 조직 및 직원 현황(2025. 10. 24. 기준)

팀	파트	성명	직급
	전무이사 직무대행	박성민	부장
경영 관리팀	팀장	이용환	차장
	국제/기획	장준	사원
	총무	오세관	사원
	경영기획	(이용규)*	
회계팀	팀장	시현진	부장
	회계 및 재무	이선주	대리
라이선스& 분배팀	팀장	이승훈	차장
	사용계약 및 정산	현유진	사원
	사용료 분배	정수진	주임
	국내외서비스 음원관리	김은총	사원
	국내외서비스 음원관리	한예빈	사원
미디어& 유튜브팀	팀장	정정수	부장
	유튜브 운영 관리/콘텐츠 제작	전승훈	대리
	유튜브 운영 관리	조서운	사원
	유튜브 운영 관리	(이용환)*	
정보 사업팀	팀장	권혁세	차장
	정보사업관리, 국고, 식별체계, 방송심의관리	(김계형)*	
	방송심의	명제승	사원
	납본	(김관기)*	
	납본	천용산	사원
	납본	최은비	사원
회원 관리팀	팀장대행	이용규	과장
	DB	진소운	사원
	회원 접수	이진영	사원
	회원 접수	김민하	사원
	민원실	(시현진)*	
회원유치 영업팀	팀장	(박성민)*	
	회원유치 영업	김관기	부장
	회원유치 영업	김계형	부장

*겸직

4. 심의

위와 같이 조직개편을 위하여 사무처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함

의안 제02호 전무이사 결원에 따른 후속조치 건

1. 의결주문

김○○ 전 전무이사(채권자)가 협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 결과, 채권자 패소(채권자가 협회 전무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신청 기각 등)로 확정된 바, 전무이사 결원에 따른 후속조치 건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함

2. 제안설명

현재 협회 전무이사의 결원에 대하여 협회 재정상황,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여부 등의 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협회에 적합한 선임 전무이사를 선임될 수 있도록 계획한 (안)을 이사회에 부의함

3. 주요 내용

가. 전무이사 결원 관련 주요 현황

- 2024. 12. 02. 김○○ 전 전무이사 사임서 제출
- 2024. 12. 06. 김○○ 전 전무이사 사임철회서 제출 건 접수 거절
- 2024. 12. 13. 박성민 전무이사 직무대행 (기한 : 전무이사 취임 시까지)
- 2025. 01. 13. 법원 방해금지가처분 소송 신청서 접수
- 2025. 08. 08. 법원 결정, 채권자(김○○ 전 전무이사) 패소

나. 관련 규정

정관 제17조(임원의 선출)

② 전무이사 1인은 회원이 아닌 자로서, 저작권 법 제도 또는 음악산업 등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며, 자격요건 및 공모방법,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정관 제23조(임원의 보선)

② 회장은 전무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관 제17조에 따라 다시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선임 기간 중 사무처 직제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급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다. 참고사항

(1) 전무이사제도 도입 배경

- 협회가 보상금수령단체 지위를 갖고 있던 당시 협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외부 신뢰도 제고 등이 주요 요인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회원이 아닌 자로서,

저작권 법제도 또는 음악산업 등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공모를 통해 ‘전문경영인’ 자격으로 전무이사를 선임하는 제도를 도입함

(2) 전무이사제도 도입 검토 및 평가

- 전문경영인을 전무이사로 선임하여 조직 독립성 강화, 책임경영 체계로 전환 되었으나, 전무이사 선임 후 5년간 약 8억 4천만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는 등 협회 재정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됨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다년간 지적 받은 신탁회계 차입금 문제는 단기적 이익(평가)을 위해 차입금 상환 이행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결정이 이루어짐

- 현재 협회 재정 상황에서 역량 있는 전무이사 선임을 위한 조건(연봉 등) 제시가 어려워 악순환 전개가 우려됨

(3) 타단체 주요 관련 현황

(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검토 중

(나)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전무이사 선임, 직무 수행 중

(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 2025년 9월 공개 모집하였으나 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무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예정

라. 검토사항

- 전무이사 결원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전무이사 선임 필요

- 현재의 협회 재정상황, 전무이사제도 도입 검토 및 평가, 앞으로의 환경 변화(보상금수령단체 지위 여부, 공직유관단체 도입 등) 등을 고려하여 협회에 보다 적합하고 역량 있는 전무이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무이사 선출 과정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분적인 제도 개선(평가 기준, 위원 구성, 등)이 필요함

마. 전무이사 선출 계획(안) - 주요 일정 기준

- 2025년 내 제반사항 준비 완료(정관 및 규정 개정(안) 도출)

- 2026년 상반기 내 정관 및 규정 개정, 전무이사 임용 여부 확정

- 2026년 7월 전무이사 직무 및 임기 개시

일정	내용	비고
2025. 11~12.	정관개정위원회 구성, 정관 및 규정 개정 연구	
2026. 1~3.	정관 및 규정 개정(이사회, 총회 개최)	
2026. 4.	심사위원회 구성, 전무이사 후보 공모	
2026. 4~5.	전무이사 심사(서류전형, 면접)	
2026. 5~6.	전무이사 임용 가부 및 보수 조건 등 심의, 의결	
2026. 6~7.	문화체육관광부 임원 승인 신청, 등기 변경 신청	
2026. 7.	전무이사 임기 개시	

4. 심의

의안 제03호 임직원에 대한 법률분쟁 비용지급 및 보전의 건

1. 의결주문

최근 협회 임직원이 당사자가 된 법적분쟁 2건에 대해 '법적분쟁에 대한 비용지급 및 보전 대상 여부 등'을 2025년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결과 비용 '지급·보전 대상'으로 판단하여, 당해 법적분쟁에 대한 비용(대상자 요청금액)을 협회가 지급하는 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함

2. 제안설명

협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적분쟁에 대해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며, 주요 현황 및 결과, 비용에 대한 근거자료가 접수되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모두 '지급·보전 대상'으로 판단한 바, 대상자에 대한 지급 여부 및 범위(금액) 확정을 위해 이사회에 부의함

3. 주요 내용

가. 협회 임직원이 당사자가 된 법적분쟁 보고

(1) 김○○ 전 전무이사의 방해금지가처분 건(2025카합50032)

(가) 채권자 : 김○○(전 전무이사)

(나) 채무자 : 최경식(현 회장)

(다) 법적분쟁의 발생사실 및 원인(요약)

- 2024. 12. 채권자가 사임서를 제출한 후 이를 철회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됨
- 이에 채권자는 '전무이사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등'의 취지로 채무자를 대상으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함

(라) 주요 현황

① 2025. 01. 13. : 법원 방해금지가처분 소송 신청서 접수

② 2025. 01~08. : 채무자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소송 대응

③ 2025. 08. 08. : 법원 결정, 채권자 패소(채권자가 협회 전무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신청 기각 등)

(마) 채무자 법적분쟁 비용 : 총 440만원(VAT 포함)

[별지 7. 참고자료(위임계약서, 법원 결정문)]

(2) 채리소프트의 협회 직원 대상 형사 고소 신청 건

(가) 채권자 : 채리소프트

(나) 채무자 : 김○○ 부장, 김○○ 부장, 이○○ 팀장

(다) 법적분쟁의 발생사실 및 원인(요약)

- 2024. 11. 채권자가 협회 시스템에 자사 특허기술이 무단 사용되었음을 주장
- 이후 수차례 공문 및 내용증명을 통해 주장 반복
- 협회 변호사 및 변리사 선임 후 검토,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 도출하였으며, 채권자에게 구체적 증거 제시를 요구했으나 명확한 자료 제시 없음
- 2025. 04.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신고, 형사고소를 진행

(라) 법적분쟁 주요 현황

- ① 2025. 04. 08. : (주)채리소프트의 특사경 개인별 고소장 접수
- ② 2025. 06. 24. : **채무자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형사 고소 대응
- ③ 2025. 09. 25. :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수신 (결과 : 각하)

(마) 채무자 법적분쟁 비용 : 총 165만원(VAT 포함)

- 변호사 선임비용 : 165만원(VAT 포함)

[별지 8. 참고자료(위임계약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바) 참고사항

- 위 사건처분결과(각하)에 대하여 (주)채리소프트에서 항고하여 검사실에 배당됨(2025항고709)

나. 관련 규정 : 임직원이 당사자가 된 법률분쟁의 비용지급 및 보전에 관한 규정

제3조(비용 지급·보전 대상 법적분쟁) ① 협회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임료 등 법적분쟁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협회 자체가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법적분쟁이 협회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 등 당해 법적분쟁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협회의 비용으로 임직원이 당사자가 된 법적분쟁의 변호사 선임료 등 관련비용을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을 당해 임직원에게 보전해줄 수 있다. 다만, 협회 인사규정 제 58조에 따라 징계가 요청되어 같은 규정 제59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거치고 있거나, 같은 규정 제55조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1.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협회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대표자(임기가 만료된 전임 대표자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협회의 임직원으로서 협회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전임 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 행한 직무행위로 한정한다. 이와 같다)와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3. 대표자 등 협회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4조(지급 및 보전 절차) ① 법적분쟁의 당사자가 된 임직원은 경영지원국(경영관리팀)에 당해 법적분쟁의 발생사실 및 그 원인, 비용 발생 사실 등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소지하고 있는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다.

② 경영관리팀은 보유하고 있거나 제출받은 서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법적분쟁이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후, 인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법적분쟁이 제3조 제2항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법적분쟁에 대한 비용을 협회가 지급하는 것에 대한 안전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받는다.

④ 이사회로부터 제3항에 따른 비용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결이 있는 경우, 회계팀은 내부결재를 거쳐 당해 법적분쟁에 따른 비용을 협회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법적분쟁의 당사자가 된 임직원이 당해 분쟁의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응 및 해결을 위하여 본인의 비용으로 그 분쟁에 따른 비용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비용을 협회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다.

⑥ 회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보전한 사실을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5조(지급 및 보전 대상 비용의 범위) 제4조에 따라 협회가 지급·보전할 수 있는 비용은 실비, 인지대, 변호사 선임료 등 당해 법적분쟁의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 내의 비용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심의

기타사항

진행 및 예정사항

1. 정관개정위원회

- 2025년 11월 위원 구성 및 개최 예정